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2호로 2023년 2월 9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2.9. ~ 2023.2.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톱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스톱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스톱킹범죄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및 의료지원 등 스톱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발생 등으로 스토킹범죄가 당사자 간 단순한 갈등이나 경범죄를 넘어 중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시하고 가해자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1.04.20.)됨.
-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는 5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4호로 2023년 2월 9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개정 및 신설(안 제4조)

다.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신설(안 제6조)

라. 추진계획,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신설(안 제7조 ~ 제9조)

마. 민간에 대한 지원 신설, 포창 및 포상(안 제11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2.9. ~ 2023.2.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 장애인 일자리 창

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력양성 사업, 맞춤형 취업 알선, 직업 적응훈련 지원,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채용 시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과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채용 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